

양계업 등록 6월 20일 현재 75.5%

-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

- 홍보팀 -

오는 12월 26일까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양계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02.12.26일 축산법이 개정)을 해야한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현재 양계농가가 5,323농가중 4,018농가가 등록을 마쳐 75.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타축종의 경우 한우는 이미 100%가 넘어 가장 빠른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양돈이 60%, 낙농이 53%, 오리가 49%로 양계업보다는 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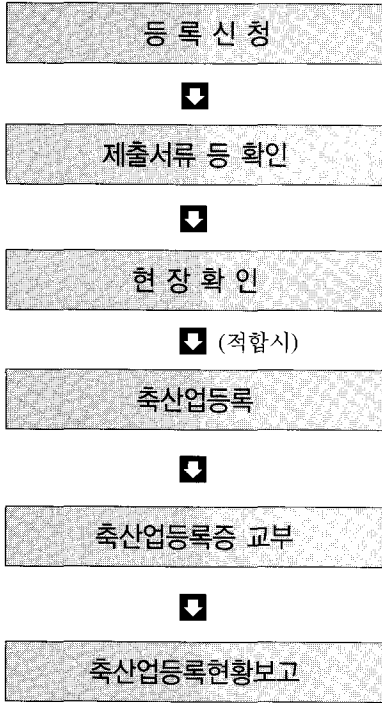
따라서 아직까지 양계업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할 것이며, 아직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변의 비등록 회원이나 무허가 양계장을 가진 농가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 축산업 등록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축산업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축산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농가지원과 관리체계는 물론 질병방역체계구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EU의 각국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도 '97년 구제역 이후 '98년부터 등록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1. 축산업의 등록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2. 등록신청 절차



-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시장·군수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 결격사유 확인

- 시장·군수
- 시설·장비기준 확인

☐ (적합시)

- 고유번호 부여
-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작성
- 축산업관리대장 기재
- ※ 전산등록

-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등 고지
- ※ 축산업등록이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님을 농가에 설명

- 연말기준 익년도 2월까지
- ※ 전산입력시 생략

3.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1) 부화업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알만 부화하여야 함

- 종계의 알
-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부화용 알)

2) 양계(가축사육)업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이 규정은 '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4. 벌칙

축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그 사실을 행정처분대상과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뒤쪽)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양계**

표1. 수당 양계사육시설 소요면적

계종	시설형태	수당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42m ² /수		
	평사	0.11m ² /수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수	100일령까지사육	
육계	케이지	0.042m ² /수		
	평사	무창	0.046m ² /수	
		개방	0.066m ² /수	

※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